

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소 방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

#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폐쇄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9월 2일 박재국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 ⇒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  
(안 제1조, 안 제2조)

## 4. 검토의견

가. 개정개요

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 조항이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에서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로 변경됨에 따라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#### 나. 검토의견

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.

붙임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